

의안번호	2108699
의 퇴 인	박주민의원
회 답 일	2021. 04. 2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요약

I. 재정수반요인

- 노선버스 저상버스 구매 보조금 지원(안 제14조제7항 신설)
- 이동지원센터 의무설치(안 제16조제2항)

II. 비용추계 결과

- 추가재정소요 : 향후 5년 간 총 1조 8,556억원, 연평균 3,711억원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2~2026년]

(단위: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	합 계	연평균
노선버스 저상버스 도입 지원 (안 제14조제7항 신설)	3,581	3,636	3,696	3,760	3,826	18,500	3,700
이동지원센터 의무설치 (안 제16조제2항)	11	11	11	12	12	57	11
합계	3,592	3,647	3,707	3,772	3,838	18,556	3,711

차 례

I. 비용추계 결과	1
II. 재정수반요인	1
III. 비용추계의 전제	2
IV. 비용추계 상세 내역	4
1. 추계의 대상 및 방법	4
2. 저상버스 보급지원(안 제14조제7항 신설)	5
가. 노선버스 대폐차량 전망	6
나. 보조금 단가	8
다. 추계 결과	9
3.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안 제16조제2항)	0..... 1
4. 추계 결과	2
[참고자료 1] 노선버스 대폐차 저상버스 전환현황	3..... 1
[참고자료 2] 전국 이동지원센터 운영현황	4..... 1
[참고자료 3] 특별교통수단 지원내역	8..... 1

일러두기

-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로 보급하고,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함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2년 3,592억원, 2026년 3,838억원 등 5년 동안 총 1조 8,556억원(연평균 3,711억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2~2026년

(단위: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	합 계	연평균
노선버스 저상버스 도입 지원 (안 제14조제7항 신설)	3,581	3,636	3,696	3,760	3,826	18,500	3,700
이동지원센터 설치 (안 제16조제2항)	11	11	11	12	12	57	11
합 계	3,592	3,647	3,707	3,772	3,838	18,556	3,71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승용자동차 대폐차 시 저상버스 우선 교체(안 제14조제7항 신설)
 -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의 차령 제한에 따른 대폐차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상버스로 우선 교체하여야 함
- 장거리 노선버스의 저상버스등 도입(안 제14조의2 신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장거리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해당 노선에 저상버스 등을 도입하여야 함(제1항)
 - 장거리 노선버스 운송사업의 저상버스등의 도입 및 운영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 전세버스의 이용 보장 등(안 제14조의3 신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전세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교통약자의 인구현황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이동편의시설 설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 이동지원센터 설치(안 제16조제2항)

-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함

Ⅲ. 비용추계의 전제

□ 안 제14조제7항에 따라 법 제84조¹⁾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²⁾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노선버스’)의 대폐차³⁾를 저상버스로 우선 도입

-
- 1) 법 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하 “차령”(車齡)이라 한다] 및 운행거리를 넘겨 운행하지 못한다. (이하 생략)
- 2) 법 제3조제1항제1호(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법 시행령제3조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시내버스 운송사업,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시외버스운송사업
- 3) 법 제84조제2항 대폐차(代廢車: 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

하게 됨에 따라 정부 보조금⁴⁾ 지원대상 확대가 예상됨

- 추계는 전체 노선버스 대폐차량에 대한 저상버스 도입 시 보조금 지원액에서 현행 기준(정부 지원사업) 사업비를 차감하여 추산
- 사업자가 노선 버스의 대폐차 시 저상버스를 모두 구매하는 것으로 가정

□ 개정안은 장거리 노선버스에 대하여 저상버스등을 도입하고(안 제14조의2), 전세버스에 대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안 제14조의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다음의 사유로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하므로 추계에서 제외함

- (안 제14조의2) 이에 대한 재정지원 추계를 위해서는 장거리 시외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할 수 있는 지 여부, 저상버스 구매 여부 등에 관한 자료가 필요함

$$- \text{추가재정소요} = \sum_{t=2022}^{2026} [\text{지원대상}_t \times \text{지원단가}_t]$$

- 그런데 장거리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의 저상버스 도입계획과 수요에 관한 자료가 미비하고, 정부의 지원단가 및 운영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합리적으로 재정지원 규모를 예측하기 곤란함
- (안 제14조의3) 이에 대한 재정지원 추계를 위해서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운행중인 차량이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현황자료가 필요함

$$- \text{추가재정소요} = \sum_{t=2022}^{2026} [\text{지원대상}_t \times \text{지원단가}_t]$$

-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범위, 해당 사업자의 운행차량이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자료가 미비하여 현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
- 다만, 국토교통부가 고속버스를 대상으로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비용을 지원했던 시범사업의 장착비용은 차량당 최대 4,000만원⁵⁾으로 나타나고 있어 참고할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저상버스 구매 보조금 단가는 2021년 예산 단

는 것을 말한다)

4) 국가(국토교통부,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상버스 구매 시 보조금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5) 국토교통부 시범사업 시 지원단가.

가에 NABO 소비자물가상승률⁶⁾을 적용하여 추산

- 안 제16조의 이동지원센터는 광역시도 중 충청북도만 미설치된 것으로 나타나, 기존 설치된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센터 운영비를 추산함
 -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고용인력은 21명이며, 경기도를 제외하고 위탁사업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연간 인당 운영비는 4,960만원
- 환경부 보조금 지원은 “저공해 승용자동차 보조사업”의 국비와 지방비 부담사례를 반영하여 국비의 46.7%를 지방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실시한다는 부칙 규정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로 함

IV. 비용추계 상세 내역

1. 추계의 대상 및 방법

- 추계 대상은 노선버스 대폐차 차량을 저상버스로 우선 도입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로, 전체 대폐차를 저상버스로 도입하였을 때 정부보조금에서 현행 저상버스 정부보조금을 차감하여 추산
 - 현행 정부지원 저상버스 보조금 사업대상은 2021년 예산상 지원물량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구체적인 추계산식은 다음의 <비용추계 산식>에 제시된 바와 같음

6)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명목임금상승률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소비자물가상승률(CPI)	0.5	1.0	1.2	1.2	1.3	1.4	1.4
명목임금상승률	1.7	2.4	2.6	2.8	2.9	3.0	3.1

<비용추계 산식>

추가재정소요 = 저상버스 보조금지원¹⁾ +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비용²⁾

이때, t 는 2022년~2026년,

$$1) \text{ 노선버스 대폐차 보조금 지원} = \sum_{t=2022}^{2026} \sum_{i=1}^2 [a - b_i] \times p_i$$

이때 i 는 보조금 지급 부처유형(1=국토교통부 저상버스 보조금 사업, 2= 환경부 저상버스 보조금사업)

a 는 노선버스 대폐차 물량 전망으로 노평균 대폐차 수(최근 3년간 평균 2,909대)가 추계기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b_i 는 현행 저상버스 구매물량

이때 i 는 부처별 보조금사업 대상

(1= 국토교통부 1,553대, 2= 환경부 1,000대(전기버스), 180대(수소버스), 2021년도 사업량이 추계기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p_i 는 보조금 지원단가로 2021년 예산단가에 NABO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이때 i 는 부처별 보조금사업비

(1= 국토교통부 저상버스 지원금(국비기준): 평균3,600만원~4,600만원(서울, 서울외)

2= 환경부 저상버스 보조금 단가(국비기준): 수소차 1.5억원, 전기차(0.8억원))

※ 재정부담 주체별

(1) 국토교통부 지원기준

서울: 40%, 서울 외 지역: 50%

(2) 환경부 지원기준

국비: 정액지급, 지방비: 지방 여건에 따라 달리 나타나므로, 환경부 수소전지승용차 보조금지원사업의 지방비 평균부담률(국비 대비 46.7%) 적용

2) 이동센터 설치 및 운영비용은 미설치된 충청북도에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때 소요비용, 유사사례 평균 인력 및 운영비 단가 적용(기 설치된 시도의 평균 21명, 인당 평균 운영비는 4,960만원 적용(국회예산정책처 명목임금상승률 적용))

2. 저상버스 보급지원(안 제14조제7항 신설)

□ 추계 대상은 모든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로 교체할 때 정부보조금에서 현행 저상버스 정부보조금을 차감하여 추산

○ 현재 정부는 저상버스 교체 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일반버스 교체 시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표 2] 노선버스 대폐차 시 버스 구매 및 교체비용 지원

현행	개정안
일반버스 교체 (정부지원 ×)	저상버스 교체 (정부지원 ○)
저상버스 교체 (정부지원 ○)	좌동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가. 노선버스 대폐차량 전망

- 노선버스 대폐차량은 최근 3년간 평균치(2,909대)가 추계기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표 3] 대폐차 노선버스 교체현황: 2018~2020년

(단위: 대수, %)

구분	2018	2019	2020	합계	평균 비중
대폐차 버스 합계 (a+b)	2,806 (100.0)	3,060 (100.0)	2,861 (100.0)	8,727 (100.0)	100.0
일반버스(a)	1,964 (70.0)	1,661 (54.3)	1,587 (55.5)	5,212 (59.2)	(59.9)
저상버스(b)	842 (30.0)	1,399 (45.7)	1,271 (44.4)	3,512 (40.2)	(40.1)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표 4] 노선버스 대폐차 전망: 2022~2026년

(단위: 대수)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대폐차 버스전망	2,909	2,909	2,909	2,909	2,909	14,54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정부는 저상버스로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국토교통부는 저상버스 1,553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이 중 전기버스와 수소버스는 1,325대(85.3%)

[표 5] 저상버스 차량 유형별 지원계획: 2021년

(단위: 대수)

구분	계	CNG	디젤	전기	수소
차량대수 (비중)	1,553 (100.0%)	228 (14.7%)	—	1,150 (74.1%)	175 (11.3%)
				1,325 (85.3%)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환경부는 전기버스(1,000대)와 수소버스(180대) 등 1,180대에 대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어, 추계기간 동안 지원규모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두 부처의 사업계획 물량에 차이가 있고, 보조금 단가도 상이하므로 각각 보조금 지원물량을 추산

- 대폐차 버스전망치([표 6])에서 두 부처의 저상버스 지원계획 물량을 차감하면, 추가지원 대상물량이 추산됨
 - 국토교통부의 저상버스 보급지원사업은 지역별 지원단가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추산(2020년 서울 32%, 서울 외지역 68%)
 - 환경부의 지원사업은 차량 종류에 따라 지원단가에 차이가 있으므로, 종류별 비중 적용: 전기버스(1,000대, 84.7%), 수소버스 180대(15.3%)

[표 6] 노선버스 대폐차 전망: 2022~2026년

(단위: 대수)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대폐차 버스전망(A)		2,909	2,909	2,909	2,909	2,909	14,545
현 행 기 준	국토부(현행, a)	1,553	1,553	1,553	1,553	1,553	7,765
	전기	1,150	1,150	1,150	1,150	1,150	5,750
	수소	175	175	175	175	175	875
	CNG	228	228	228	228	228	1,140
	환경부(현행, b)	1,180	1,180	1,180	1,180	1,180	5,900
	전기버스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수소버스	180	180	180	180	180	900
개 정 안 추 가	국토부(A-a)	1,356	1,356	1,356	1,356	1,356	6,780
	서울	434	434	434	434	434	2,170
	서울외	922	922	922	922	922	4,610
	환경부(A-b)	1,729	1,729	1,729	1,729	1,729	8,645
	전기버스	1,465	1,465	1,465	1,465	1,465	7,326
	수소버스	264	264	264	264	264	1,319

주 1. 환경부 현행사업은 전기버스, 수소버스 지원물량이며 국토교통부 현행사업은 저상버스 지원물량
 2. 개정안에 따른 추가물량은 2021년 현행 사업 중 전기버스와 수소버스 비중이 향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자료: 국토교통부,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보조금 단가

□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구매 보조금 단가는 국토교통부 사업의 경우 평균 9,200만원(국비와 지방비 합계), 환경부는 차량별 정액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국토교통부 저상버스 보조사업의 경우 0.92억원(국비+지방비), 환경부는 전기버스는 0.8억원(국비), 수소버스는 1.5억원(국비)⁷⁾으로 달리 나타나므로 이를 각각 계산하여 합산함
 - 국토교통부: 평균지원단가 0.92억원(국비+지방비)
 - 환경부: 전기버스 0.8억원, 수소버스 1.5억원(국비), 지방비 추산불가

[표 7] 국토교통부(국비) 저상버스 보조금 지급단가

(단위: 천원/대)

구 분	2021년 보조금 지급단가					
	서울			서울 외		
	국비(40%)	지방비(60%)	합계	국비(50%)	지방비(50%)	합계
CNG 등	35,200	52,800	88,000	44,000	44,000	88,000
전기·수소버스	36,800	55,200	92,000	46,000	46,000	92,000
평균	36,000	54,000	90,000	45,000	45,000	90,000

주 1. 국고보조율: 서울 40%, 그외 시·도 50%

2. 차량구매 가격에 따라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그외 부담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환경부는 전기버스와 수소버스 구매 시 비용을 보조하고 있으며 2021년 예산기준 차량 유형별로 정액지원
 - 환경부 보조사업은 정액지원으로 지방비 부담을 추산하기 곤란
 - 다만, 환경부 “저공해 승용자동차 보조사업”의 국비와 지방비 부담사례⁸⁾를 분석한 결과, 평균 국비의 46.7%를 지방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

7) 환경부 사업비는 지방비 정액보조사업

8) 환경부 저공해 차량지원사업 중 ‘수소전기자동차’ 재정부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6개 광역시 국비 대비 평균 46.7%를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수소전기자동차(만원/대)		
	국비	시비	합계
부산광역시	2,250	1,200	3,450
대구광역시	2,250	1,000	3,250
인천광역시	2,250	1,000	3,250
광주광역시	2,250	1,000	3,250
대전광역시	2,250	1,000	3,250
울산광역시	2,250	1,150	3,400
세종특별자치시	2,250	1,000	3,250

자료: 저공해차 통합누리집(<http://www.ev.or.kr> 2021.3.16.검색)

[표 8] 환경부 저상버스 보조금 지급단가

(단위: 만원)

구 분	2021년 지원단가	
	국비	지방비(추정)
전기버스	8,000	3,733
수소버스	15,000	7,000

자료: 환경부 및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부처별 보조금 지급단가에 NABO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전망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남

- 국토교통부 사업의 보조금 단가는 서울과 서울외지역별로 차이가 있어 지역별로 구분하여 전망
- 환경부 사업의 보조금 단가는 전기버스와 수소버스별로 차이가 있어 차량 유형별로 구분하여 전망

[표 9] 저상버스 보조금 단가 전망: 2022년~2026년

(단위: 천원)

			2022	2023	2024	2025	2026
국토교통부 보조금 지원단가	국비	서울	37,242	37,688	38,178	38,713	39,255
		서울외	46,552	47,111	47,723	48,391	49,069
	지방비	서울	55,862	56,533	57,268	58,069	58,882
		서울외	46,552	47,111	47,723	48,391	49,069
환경부 보조금 지원단가	전기버스	국비	80,960	81,932	82,997	84,159	85,337
		지방비	37,781	38,235	38,732	39,274	39,824
	수소버스	국비	151,800	153,622	155,619	157,797	160,007
		지방비	70,840	71,690	72,622	73,639	74,670

주: 환경부의 지방비 부담은 “저공해 승용자동차 보조사업”의 평균 재정부담률(국비의 46.7%를 지방 부담)을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노선버스 대폐차 시 모두 저상버스로 보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2년 3,580억원, 2026년 3,826억원 등 5년 동안 1조 8,500억원으로 추계됨

[표 10]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2년~2026년

(단위: 백만원)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연평균
저상버스 보조금 추가지급 (국토교통부)		126,249	127,764	129,425	131,237	133,074	647,749	129,550
A	국비	59,085	59,794	60,571	61,419	62,279	303,147	60,629
	지방비	67,164	67,970	68,854	69,818	70,795	344,603	68,921
저상버스 보조금 추가지급 (환경부)		231,846	235,849	240,164	244,805	249,542	1,202,207	240,441
B	국비	158,664	160,568	162,655	164,932	167,241	814,059	162,812
	지방비	73,182	75,282	77,509	79,873	82,301	388,147	77,629
합계 (A+B)	국비	217,748	220,361	223,226	226,351	229,520	1,117,206	223,441
	지방비	140,347	143,252	146,363	149,691	153,096	732,750	146,550
	합계	358,095	363,613	369,589	376,042	382,616	1,849,956	369,99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안 제16조제2항)

- 전국 시군 지역에 대한 이동지원센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2021년 4월 기준 미설치된 충청북도의 이동지원센터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구체적인 설치 및 운영계획안이 나타나지 않아, 기설치된 7개 광역시도의 운영비용을 참고하여 센터당 21명 콜센터 직원을 채용하고, 연간 평균 운영비(인당) 4,960만원으로 가정함
 - 경기도를 제외하고 모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어, 콜센터 직원과 센터 운영비 등 위탁사업비는 센터 직원당 평균 운영비용을 적용
 - 자체 운영중인 경기도를 제외한 6개 도지역의 평균 인원은 21명, 연간 평균운영비는 10억원 수준(인당 평균 4,960만원)

[표 11] 시도 이동지원센터 지역별 운영현황

(단위: 백만원)

	운영방식	운영인력(명)			연간 운영비용	연간 평균 운영비(인당)
		콜센터직원	운전자	인력합계		
경기도	자체운영	—			80	34.6
강원도	위탁운영	16	—	16	554	47.1
충청남도		21	—	21	990	49.8
전라북도		24	—	24	1,196	70.0
전라남도		20	—	20	1,400	42.8
경상북도		18	—	18	770	49.6
경상남도		29	—	29	1,439	49.0
평균		21		21	918	49.6

자료: 국토교통부

- 매년 운영비는 국회예산정책처 명목임금상승률을 적용하며, 전액 지방비로 지급되는 것으로 가정
 - － 현재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시 소요비용은 전액 지방비로 지원되고 있으며, 국비지원은 장애인이동편의차량⁹⁾ 지원만 이뤄지고 있음

[표 12]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2~2026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인원(a, 명)	21	21	21	21	21	—
운영비단가(인당) (b)	51	52	54	55	57	—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비 (a×b, 지방비)	1,069	1,099	1,130	1,164	1,200	5,66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9) 국토교통부의 특별이동수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참고자료 3]과 같음

4. 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로 보급하고,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함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2년 3,592억원, 2026년 3,838억원 등 5년 동안 총 1조 8,556억원(연평균 3,711억원)으로 추계됨

[표 13]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2~2026년

(단위: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연평균
저상버스 보조금 추가지급(a)	3,581	3,636	3,696	3,760	3,826	18,500	3,700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b)	11	11	11	12	12	57	11
합계(a+b)	3,592	3,647	3,707	3,772	3,838	18,556	3,711
국비	2,188	2,215	2,244	2,275	2,307	11,229	2,246
지방비	1,403	1,433	1,464	1,497	1,531	7,327	1,46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참고자료 1] 노선버스 대폐차 저상버스 전환현황¹⁰⁾

[참고표 1] 대폐차 저상버스 전환현황: 2018~2020년

구분	2018			2019			2020		
	계	저상	일반	계	저상	일반	계	저상	일반
서울	906	418	488	1,041	945	96	846	739	107
부산	44	5	39	45	2	43	60	7	53
대구	140	24	116	169	43	126	199	53	146
인천	131	16	115	122	20	102	144	41	101
광주	102	12	90	77	11	66	112	14	98
대전	139	44	95	102	15	87	138	57	81
울산	57	9	48	62	4	58	49	—	49
세종	0	0	0	0	0	0	2	—	2
경기	809	160	649	874	187	687	704	175	529
강원	24	8	16	31	10	21	34	13	21
충북	23	20	3	43	12	31	57	10	47
충남	111	33	78	147	35	112	90	13	76
전북	27	7	20	54	18	36	66	20	46
전남	22	8	14	39	13	26	52	13	39
경북	90	10	80	96	6	90	118	6	112
경남	139	53	86	100	63	37	158	85	73
제주	42	15	27	58	15	43	32	25	7
합계	2,806	842	1,964	3,060	1,399	1,661	2,861	1,271	1,587
(비율)	100.0	30.0	70.0	100.0	45.7	54.3	100.0	44.4	55.5

10) 국토교통부 제출자료(2021)

[참고자료 2] 전국 이동지원센터 운영현황¹¹⁾

구분		운영방식	운영인력			2020년 연간운영비 (단위: 백만원)
			안내 (A)	운전 (B)	계 (A+B)	
서울특별시		위탁운영	67	721	788	58,901
부산광역시		위탁운영	21	147	168	15,711
대구광역시		위탁운영	20	145	165	18,500
인천광역시		위탁운영	20	165	185	18,017
광주광역시		위탁운영	16	124	140	12,593
대전광역시		위탁운영	14	106	120	10,693
울산광역시		위탁운영	23	63	86	6,427
세종특별자치시		위탁운영	4	22	26	1,370
경기도	광역센터(운영시)	자체	0	0	0	80
	수원시	위탁운영	13	97	110	7,368
	성남시	위탁운영	11	116	127	-
	의정부시	위탁운영	7	40	47	3,347
	안양시	위탁운영	3	38	41	3,000
	부천시	위탁운영	4	104	108	5,977
	광명시	위탁운영	4	32	36	2,042
	평택시	위탁운영	6	46	52	4,200
	동두천시	위탁운영	2	17	19	773
	안산시	위탁운영	12	52	64	4,893
	고양시	위탁운영	13	76	89	7,440
	과천시	위탁운영	2	6	8	441
	구리시	위탁운영	3	19	22	1,020
	남양주시	위탁운영	11	48	59	2,900
	오산시	위탁운영	3	18	21	1,492
	시흥시	위탁운영	6	34	40	2,312
	군포시	위탁운영	3	24	27	1,816
	의왕시	위탁운영	2	11	13	719
	하남시	위탁운영	5	24	29	1,700
	용인시	위탁운영	12	88	100	6,823
	파주시	위탁운영	6	41	47	4,145
	이천시	위탁운영	3	24	27	1,817
	안성시	위탁운영	2	19	21	900
	김포시	위탁운영	4	51	55	3,216
	화성시	위탁운영	11	62	73	4,181
	광주시	위탁운영	4	42	46	2,560
	양주시	위탁운영	3	26	29	1,200
	포천시	위탁운영	2	24	26	889
	여주시	위탁운영	2	21	23	1,408
	연천군	위탁운영	2	14	16	899
	가평군	위탁운영	1	15	16	960
	양평군	위탁운영	6	25	31	1,750
강원도	광역센터(운영시)	위탁운영	16	0	16	554
	춘천시	위탁운영	3	35	38	1,543

11)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정리

구분		운영방식	운영인력			2020년 연간운영비 (단위: 백만원)
			안내 (A)	운전 (B)	계 (A+B)	
	원주시	위탁운영	2	28	30	1,621
	강릉시	위탁운영	2	25	27	1,176
	동해시	위탁운영	1	7	8	300
	태백시	위탁운영	2	4	6	177
	속초시	위탁운영	1	8	9	431
	삼척시	위탁운영	0	9	9	421
	홍천군	위탁운영	1	10	11	431
	횡성군	위탁운영	1	6	7	345
	영월군	위탁운영	1	6	7	250
	평창군	위탁운영	1	4	5	220
	정선군	위탁운영	1	6	7	323
	철원군	위탁운영	0	5	5	260
	화천군	위탁운영	1	4	5	164
	양구군	위탁운영	1	4	5	170
	인제군	위탁운영	0	4	4	140
	고성군	위탁운영	0	4	4	258
	양양군	위탁운영	0	3	3	130
			0	2	2	101
충청북도	광역센터(운영시)	미설치				
	청주시	위탁운영	8	73	81	3,982
	충주시	위탁운영	7	24	31	1,346
	제천시	위탁운영	2	11	13	552
	보은군	위탁운영	1	1	2	29
	옥천군	위탁운영	3	8	11	630
	영동군	위탁운영	1	2	3	72
	증평군	위탁운영	1	2	3	96
	진천군	위탁운영	1	5	6	256
	괴산군	위탁운영	2	2	4	113
	음성군	위탁운영	1	5	6	212,000
			1	1	2	66,316
	단양군	위탁운영	1	3	4	102
충청남도	광역센터(운영시)	위탁운영	21	0	21	990
	천안시	위탁운영	3	45	48	3,388
	공주시	위탁운영	1	9	10	333
	보령시	위탁운영	1	9	10	390
	아산시	위탁운영	3	27	30	1,450
	서산시	위탁운영	1	8	9	452
	논산시	위탁운영	3	11	14	754
	계룡시	위탁운영	1	1	14	
	당진시	위탁운영	1	12	13	589
	금산군	위탁운영	1	3	4	206
	부여군	위탁운영	1	4	5	90
	서천군	위탁운영	1	6	7	198
	청양군	위탁운영	1	3	4	143
	홍성군	위탁운영	1	9	10	428
	예산군	위탁운영	1	7	8	368
	태안군	위탁운영	0	2	2	77

구분		운영방식	운영인력			2020년 연간운영비 (단위: 백만원)
			안내 (A)	운전 (B)	계 (A+B)	
전라북도	광역센터(운영시)	위탁운영	24	0	24	1,196
	전주시	위탁운영	5	69	74	3,814
	군산시	위탁운영	1	25	26	838
	익산시	위탁운영	1	30	31	1,351
	정읍시	위탁운영	1	16	17	460
	남원시	위탁운영	1	9	10	351
	김제시	위탁운영	1	15	16	577
	완주군	위탁운영	1	10	11	423
	진안군	위탁운영	1	4	5	242
	무주군	위탁운영	1	4	5	173
	장수군	위탁운영	1	4	5	176
	임실군	위탁운영	1	3	4	135
	순창군	위탁운영	0	4	4	214
	고창군	위탁운영	2	7	9	313
	부안군	위탁운영	1	8	9	337
전라남도	광역센터(운영시)	위탁운영	20		20	1,400
	목포시	위탁운영	3	29	22	1,027
	여수시	위탁운영	3	35	38	2,190
	순천시	위탁운영	2	30	32	1,469
	나주시	위탁운영	1	13	14	780
	광양시	위탁운영	2	15	17	676
	담양군	위탁운영	1	4	5	250
	곡성군	위탁운영	1	3	4	159
	구례군	위탁운영	1	2	3	92
	고흥군	위탁운영	1	5	6	239
	보성군	위탁운영	1	3	4	220
	화순군	위탁운영	1	9	10	315
	장흥군	위탁운영	2	9	11	404
	강진군	위탁운영	1	3	4	150
	해남군	위탁운영	2	8	10	380
	영암군	위탁운영	1	5	6	194
	무안군	위탁운영	3	9	12	310
	함평군	위탁운영	2	4	6	180
	영광군	위탁운영	1	5	6	224
	장성군	위탁운영	1	4	5	172
	완도군	위탁운영	1	4	5	159
	진도군	위탁운영	1	3	4	150
	신안군	위탁운영	1	4	5	208
경상북도	광역센터(운영시)	위탁운영	18		18	770
	포항시	위탁운영	4	28	32	1,664
	경주시	위탁운영	3	20	23	810
	김천시	위탁운영	1	10	11	460
	안동시	위탁운영	2	17	19	1,236
	구미시	위탁운영	1	17	18	942
	영주시	위탁운영	1	6	7	303
	영천시	위탁운영	1	7	8	300
	상주시	위탁운영	2	10	12	465

구분		운영방식	운영인력			2020년 연간운영비 (단위: 백만원)
			안내 (A)	운전 (B)	계 (A+B)	
	문경시	위탁운영	1	7	8	300
	경산시	위탁운영	1	19	20	784
	군위군	위탁운영	2	4	6	180
	의성군	위탁운영	2	4	6	260
	청송군	위탁운영	1	2	3	95
	영양군	위탁운영	1	3	4	178
	영덕군	위탁운영	2	3	3	90
	청도군	위탁운영	2	3	5	120
	고령군	직영	1	3	4	80
	성주군	위탁운영	1	4	5	160
	칠곡군	위탁운영	1	5	6	228
	예천군	위탁운영	1	6	7	180
	봉화군	위탁운영	1	4	5	177
	울진군	위탁운영	1	7	8	301
	울릉군	위탁운영	0	7	7	6
경상남도	광역시센터(운영시)	위탁운영	29	0	29	1,439
	창원시	위탁운영	0	133	133	6,900
	진주시	위탁운영	6	32	38	2,402
	통영시	위탁운영	2	20	22	996
	사천시	위탁운영	0	9	9	357
	김해시	위탁운영	0	50	50	2,500
	밀양시	위탁운영	1	25	26	1,139
	거제시	위탁운영	0	33	33	1,967
	양산시	위탁운영	4	48	52	2,481
	의령군	위탁운영	0	5	5	213
	함안군	위탁운영	1	8	9	350
	창녕군	위탁운영	0	10	10	478
	고성군	위탁운영	1	6	7	279
	남해군	위탁운영	1	7	8	301
	하동군	위탁운영	1	7	8	315
	산청군	위탁운영	0	7	7	280
	함양군	위탁운영	1	6	7	233
	거창군	위탁운영	1(관리)	5	6	232
	합천군	위탁운영	0	5	5	204
제주특별자치도		위탁운영	8	83	91	8,366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정리

[참고자료 3] 특별교통수단 지원내역¹²⁾

□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 구매 보조금 지원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남

- 2020년 국고보조비율: 서울특별시 40%(대당 16.8백만원), 그 외 시·도 50%(대당 21백만원)
- 2021년 국고보조비율: 서울특별시 40%(대당 18.4백만원), 그 외 시·도 50%(대당 23백만원)

[참고표 3] 전국 지방자치단체 특별교통수단 지원내역: 2020~2021년

(단위: 천원, 대)

구분	2020년 국고 지원		2021년 국고지원	
	예산액	지원대수	예산액	지원대수
합계	5,250,000	259	4,779,400	210
서울	756,000	45	202,400	11
부산	420,000	20	575,000	25
대구	84,000	4	299,000	13
인천	—	—	552,000	24
광주	—	—	—	—
대전	84,000	4	230,000	10
울산	84,000	4	207,000	9
세종	—	—	23,000	1
경기	42,000	2	598,000	26
강원	630,000	30	253,000	11
충북	399,000	19	253,000	11
충남	630,000	30	161,000	7
전북	378,000	18	184,000	8
전남	546,000	26	506,000	22
경북	483,000	23	322,000	14
경남	546,000	26	368,000	16
제주	168,000	8	46,000	2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12) 국토교통부 제출자료(2021.4.)